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82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문금주
김원이 · 차지호 · 임미애
조인철 · 박용갑 · 이춘석
김성범 · 조계원 · 허영
이용선 · 정준호 · 김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루질 · 낚시 · 물놀이 등 연안활동으로 최근 5년('21~'25년)간 연평균 620건의 연안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자 예방을 위한 규정의 부실로 매년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갯벌 · 방파제 · 갯바위 등의 장소는 해경 등 구조 활동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간적 범위가 넓어 사고 발생 시 발견 및 구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하여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출입통제등)에 근거하여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거나 이외의 위험장소는 연안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안위험구역은 지자체 등에게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하고 연안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이나 기상특보 발령 시 출입의 제한 등 행위적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안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연안 출입통제장소와 연안위험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관리체계를 사고이력·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위험구역·주의구역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명조끼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기상특보(태풍, 풍랑 등)의 발령, 너울성파도·이안류 발생 등 연안해역에서 활동하는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의 퇴거 또는 이동 명령권, 직접조치 등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사고 발생을 예방·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위험예보 종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추락 위험이 높고 배수 시 유속이 급속히 증가하는 갑문
5. 연안절벽, 항포구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관리구역은 연안사고 이력·위험도 및 구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통제구역: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구역
2. 위험구역: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 요인이 많아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구역
3. 주의구역: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어, 방문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순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구역을 지정·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⑤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의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

-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통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구급·수색 활동 또는 순찰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점검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통제구역에 있는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3(위험구역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안가·방파제·갯벌·갯바위 등에서 물놀이·낚시·채집 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다.

1.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의 착용 또는 휴대
 2. 태풍·풍랑·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 또는 대조기 도래 시 출입 제한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험구역을 출입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

청장이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 및 퇴거 명령 또는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4(주의구역 안전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험정보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홍보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등 안전관리
3.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5(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즉시조치) ① 해양경찰공무원은 연안해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선박·차량 등 이동수단의 퇴거 또는 이동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태풍, 풍랑, 해일 특보에 한한다)가 발령된 경우
2. 너울성 파도, 이상 조류, 유속 등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로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한도에서 직접 그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조치는 위험이 소멸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3항 및 제10조의5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생략)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u> 2. (생략) 3. <u>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u> 4. ~ 6. (생략) ③ (생략)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2. (현행과 같음) 3. <u>위험예보 종류·방법 등에 관한 사항</u> 4.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u>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u> 1. <u>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u>	제10조(연안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u>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u> 2. <u>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u>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환
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
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
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
생하는 장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
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
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
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
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환
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
는 갯바위

4. 추락 위험이 높고 배수 시
유속이 급속히 증가하는 갑문

5. 연안절벽, 항포구 등 해상추
락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소

② 관리구역은 연안사고 이력
· 위험도 및 구조환경 등을 고
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
다.

1. 통제구역: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구조작업에 어려
움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출입 또는 이용을 금지
하는 구역

2. 위험구역: 사고가 자주 발생
하거나, 위험 요인이 많아 인
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출입 또는 이
용할 수 있는 구역

3. 주의구역: 일정 수준의 위험성이 있어, 방문객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순찰 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구역을 지정·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⑤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

<신 설>

장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은 연
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9조제
2항제4호의 위험표지판 등 안
전관리 시설물을 설치·관리해
야 한다.

제10조의2(통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누구든지 통제구
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구조·구급·수색 활동 또는
순찰 등 공무를 수행하는 경
우

2.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관리
시설물 등을 설치·점검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해양수산부
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
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장 등 관계기관의 허가
를 받은 경우

②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통제구역에 있는 자

<신 설>

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3(위험구역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안가·방파제·갯벌·갯바위 등에서 물놀이·낚시·채집 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정할 수 있다.

1. 구멍조끼 등 안전장구의 착용 또는 휴대

2. 태풍·풍랑·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 또는 대조기 도래 시 출입 제한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험구역을 출입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 및 퇴거 명령 또는 출입·이용을 제

<신 설>

한할 수 있다.

제10조의4(주의구역 안전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 및 관할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험정보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홍보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계도 등 안전관리
3.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의5(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즉시조치) ① 해양경찰공무원
은 연안해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장소
에 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
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
지·제한하거나 그 장소에 있
는 사람이나 선박·차량 등 이
동수단의 퇴거 또는 이동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다.

1.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
(태풍, 풍랑, 해일 특보에 한
한다)가 발령된 경우

2. 너울성 파도, 이상 조류, 유
속 등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
로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따르
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한도
에서 직접 그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해양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히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고지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조치는 위험이 소
멸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

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u>제3항 및 제10조의5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 ----- -----.
--	---